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여기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314
----------	-------

발의연월일 : 2026. 1. 26.

발 의 자 : 여기구 · 윤준병 · 김동아
김병주 · 박희승 · 조인철
이개호 · 임미애 · 임호선
서삼석 · 최혁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기후변화 가속으로 북극 해빙이 녹기 시작하며, 그간 선박통항이 불가능했던 북극항로가 러시아를 중심으로 개발·이용되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의 전통적 교역로인 말라카 해협과 대만 해협의 통항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북극항로를 이용하고, 상업 항로화할 필요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음.

특히, 북극항로 연안국인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하여, 중국, 일본, 캐나다 등의 강대국은 이미 북극항로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관련 국가전략을 발표하는 등 북극항로 진출을 위한 각국의 주도권 싸움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한편, 우리나라는 북극항로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운항 경험을 축적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시범운항을 실시하고, 2013년 북극이사회 옵서버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북극항로 이용 및 북극권 국

가와의 협력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북극항로 진출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과학 연구, 국제협력 및 해운·물류 관점에 한정된 정책 추진으로, 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 경제발전의 기회요인으로 삼기에는 일부 미비했던 측면이 있음.

이에 해빙면적 감소에 따른 북극항로의 상업적 활용 기회를 선점하고 북극항로 활용을 확대함에 따라 촉진되는 연관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우리나라의 북극이사회 옵서버 역할을 강화하고, 범정부차원의 북극항로위원회를 신설하여 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북극항로 상업적 활용을 촉진하고 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북극항로의 상업적 활용을 촉진하고 북극항로와 연관된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북극항로의 활용을 촉진하고 북극항로 연관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북극항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북극항로 연관산업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

음(안 제6조).

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북극항로 육성전략을 수립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북극항로 육성전략의 시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7조).

마.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관계 부처 간 의견을 통합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북극항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검토·조정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북극항로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북극항로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고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북극항로추진본부를 두도록 함(안 제10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을 위하여 북극항로사업자에게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고,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1조).

아. 해양수산부장관은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에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

자. 해양수산부장관은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3조).

차. 해양수산부장관은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안 제14조).

카. 해양수산부장관은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가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하여 기술 및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5조).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북극항로의 상업적 활용을 촉진하고 북극항로와 연관된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극해”란 북위 66도 30분 이북의 해역을 말한다.
2. “북극항로”란 북극해를 포함하여 운항하는 항로를 말한다.
3. “북극항로 연관산업”이란 북극항로를 활용한 선박 운항과 관련된 산업이나 북극항로 운항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 또는 북극항로 활용 확대에 따라 촉진되는 산업과 밀접히 연관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4. “북극항로사업자”란 북극항로 연관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북극항로의 활용

을 촉진하고 북극항로 연관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북극항로 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북극해와 북극항로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북극항로 연관산업의 국내외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지역별·부문별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5.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도시개발, 도시재생 및 교통망 확충에 관한 사항
6.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항만배후단지, 물류단지, 산업단지의 조성·지원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사항
7. 북극항로 연관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8. 북극항로 연관산업 관련 연구·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9. 북극항로 연관산업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1.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북극항로 운항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북극항로 이용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북극항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이하 “실행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북극항로 연관산업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7조(지역별 북극항로 육성전략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북극항로 육성전략(이하 “육성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성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5조제2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전략의 시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육성전략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북극항로위원회) ①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관계 부처 간 의견을 통합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북극항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대한 종합적인 국가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 관련 관계 부처별 주요 정책의 추진성과 점검 및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

3.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법령·제도 개선 건의에 관한 사항
 4.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에 필요한 자원 조달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5. 북극항로 연관산업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북극항로 이용 및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2. 북극항로 관련 기술·경제·사회·국제협력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된다.
 - ⑥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해양수산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극항로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조정
2.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② 실무위원회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심의·의결한 사항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③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북극항로추진본부) ①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고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북극항로추진본부를 둔다.

② 북극항로추진본부의 구성·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재정 및 금융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을 위하여 북극항로사업자에게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고,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연구개발) 해양수산부장관은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과 공동으로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에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북극항로 연관산업 관련 대학·연구기관·기업 등의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분석
2. 산학 협력 활성화를 통한 전문인력의 양성
3. 국제협력 등을 통한 글로벌인재의 양성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극항로 연관산업에 관한 조사·연구·개발
2. 북극항로 운항 데이터 구축·제공 및 상업 운항 지원

3. 북극항로 정보플랫폼 구축

4. 북극항로 안전운항 정보, 고정밀 위치 정보 및 최적항로 정보 제공 등 항해안전 지원

5. 그 밖에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센터의 설치·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국제협력) 해양수산부장관은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가 간의 협력강화를 위하여 기술 및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への 참가, 국제공동연구개발, 관련 기술의 국제 표준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6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단체 또는 법인

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북극항로위원회 위원의 위촉 등 위원회의 설립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